
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[안]

제 1-1 판

2022. 11. 24.



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

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(제1-1판)

1. 목적

- '22.11.3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이 된 「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」에 따라 지원대상자, 치료범위 등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·부상자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

2. 근거

-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('22.10.31, '22.11.3)
 - ※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세부 추진방안

3. 지원 대상

- ❶ 이태원 사고 당시(10.29 18:00~10.30 06:00) 사고 현장(해밀턴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)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
 - 사고로 인한 사망자, 부상자(신체적 부상자)
 - * (불법체류 여부 구분 없이) 외국인 포함
 - 사고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
 - * 구호활동 참여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(소방청, 경찰청, 지자체)에서 확인한 자
 -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은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
- ❷ 사망자·부상자의 가족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형제자매 限)

4. 지원 내용

- (대상질환)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지원대상자의 신체적·정신적 질병 및 그 후유증
 - * 인과성 인정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, 다만 인과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적 치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절차를 적용
 - * (예시) 사고일 이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질병은 제외 → 다만 지원 제외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

○ (지원내용) 의료기관(약국 포함)을 이용한 대상질환의 치료비

1)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치료비용으로 급여 진료비(보험자부담금 + 본인부담금), 비급여 진료비 지원

※ 비급여 진료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, 의료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(단, 미용시술, 치아교정, 예방접종, 건강검진, 부대비용(예시 :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 발급비 등), 그 밖에 사고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제외)

< (참고) 1인실도 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인지 >

- 현재 2인실까지만 건강보험 지원되는 부분 고려, 1인실은 비급여 진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
○ 다만, 치료 목적의 필요*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1인실도 지원 가능
* (예시) 감염관리, 외상후스트레스장애(PTSD) 등

-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 · 부상자의 가족은 심리치료 의료비(급여, 비급여, 약제비) 지원 원칙

* 유가족 실신으로 인한 응급실 비용 등 사고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리치료 의료비 이외의 의료비 지원 인정 가능

2) 원외 처방된 약제비의 경우 본인부담금* 지원

- * 전액 본인부담약제(100/100) 포함
* 의사가 이태원 사고와 인과성 있는 질환에 대하여 처방한 약제비 대상

<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>

| 지원 대상 | 지원내용 |
|---|---|
| ①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- 사고로 인한 사망자 · 부상자 - 사고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-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| 의료비 지원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|
| ② 사망자 · 부상자의 가족(배우자, 직계존속 · 비속, 형제자매) |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※유가족 실신으로 인한 응급실 비용 등 사고 관련성이 명백한 경우 예외 인정 |

5. 지원 기간

○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기간

- 우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(22.10.29.~'23.4.28) 간 지원, 6개월을 초과 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 검토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

6. 의료비 지원 절차

①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

-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(NDMS)에 등록되거나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계로 관리된 사람(부상자, 사망자 · 부상자 가족)
※ (대상자 확인방법) NDMS에 등록되거나 중대본 통계로 관리되는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“요양기관 정보마당(medicare.nhis.or.kr)”에서 확인 가능

① 의료비 대납 신청

- (지원대상자)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에 <서식 1> 의료비 대납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 제출
→ 이 경우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의료비용을 수납할 수 없음
※ 다만, 이 지침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질환 치료비 이외의 의료비용은 별도 수납 가능

< (참고) 의료비 대납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방법 >

- | |
|---|
| ① 수진자 신분증 사본 : 제출 필요 |
| ② 사고 사상자와 수진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: 제출 필요. 단, 해당 수진자가 “요양기관 정보마당”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|
| ③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휴대전화 위치정보 등) : 제출 필요. 단, 해당 수진자 또는 해당 수진자와 가족관계(배우자, 직계존속 · 비속, 형제자매)가 있는 사고 사상자가 “요양기관 정보마당”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 |

- (의료기관) ‘요양기관 정보마당(medicare.nhis.or.kr)’에서 대상자 여부 조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
※ (심평원 청구 방법) 기존 건강보험 청구 절차를 따르되,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<붙임>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내용에 의함(11.29.부터 청구 가능)
※ (“요양기관 정보마당”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) 수진자 또는 수진자 가족(사고 사상자)이 “요양기관 정보마당”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, 해당 수진자는 대납 신청을 할 수 없고 우선 의료기관에 수납 필요(→②-① 절차로 신청)
- 다만, 이 경우 외국인 환자는 건강보험 자격 유무에 따라 ④의 지원 절차로 신청

② 이미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

- (지원대상자) 건강보험공단에 <서식 2> 의료비 지급 신청서

(첨부서류 포함) 제출

<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>

- 신청인은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접수
 - 1) (우편)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 리젠틴빌딩 5층 국민건강보험공단
 - 2) (이메일) 0047160@nhis.or.kr
 - 3) (팩스) 033-749-6360
 - 4) (방문접수)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*에서 접수 →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
 - * (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주소) 서울 중구 무교로 21 익스체인지빌딩 3층
- ※ 의료비 지급 신청서 기재 누락 또는 오기(誤記), 첨부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,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
< (참고) 의료비 지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방법 >

- ① 의료비 지급 계산서(영수증), 의료비 지급 세부 내역서, 수진자 신분증 사본 : 제출 필요
- ② 의사소견서 :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제출 필요
- ③ 사고 사상자와 수진자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: 제출 필요 단, 해당 수진자가 “요양기관 정보마당”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
- ④ 위임장,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, 상속대표 합의동의서 등 : 수진자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제출 필요
- 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휴대전화 위치정보 등) : 제출 필요 단, 해당 수진자 또는 해당 수진자와 가족관계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, 형제자매)가 있는 사고 사상자가 “요양기관 정보마당”에서 조회될 경우 제출 불필요

- (건강보험공단) ▲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, ▲ 비급여 진료비의 지원 제외대상 여부 등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

※ 건보공단은 ‘입금결과 문자 통보 서비스’ 실시 예정

②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

-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(NDMS)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로 관리되지 않은 사람

①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이전*인 경우

* “요양기관 정보마당(medicare.nhis.or.kr)”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

- (신청인)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 수납 후 건강보험공단에 <서식 2>
의료비 지급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 제출

*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등 심사를 위하여 첨부서류 누락 없이 제출 필요

- (건강보험공단) 지급 신청서,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①지원대상자 명단 등록(→ “요양기관 정보마당” 조회 가능),
②본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

②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인 경우

- (지원대상자) 위 ①과 동일하게 “대납 신청” 또는 “지급 신청” 가능

③ 구호활동 참여자(소방·경찰·지자체 공무원)

* 재난관리책임기관(소방청, 경찰청, 지자체)에서 제공되는 ‘구호활동 참여자 명단’ 기준으로, “요양기관 정보마당(medicare.nhis.or.kr)”에서 대상자로 조회 시 지원 가능

- (지원대상자) 위 ①과 동일하게 “대납 신청” 또는 “지급 신청” 가능

④ 외국인

①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에 해당할 경우

- 위 ① 또는 ②의 지원 절차 적용

②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

- (신청인)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 수납 후 건강보험공단에 <서식 2>
의료비 지급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 제출

- (의료기관 직접 지급 신청) 외국인의 의료비 수납이 곤란할 경우, 의료기관은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<서식3> 위임장을 작성 받아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“의료비 지급 신청서”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계좌에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
 - ※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“의료비 대납 신청서”를 받고 별도 수납 없이 퇴원하도록 한 경우, 별도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 예정
 - ※ 지급 계좌는 대한민국 국내 계좌만 가능

7. 정산

-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치료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대납(代納)하거나, 지원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
 - ※ 급여 진료비(보험자 부담금)은 “건강보험 지급기준”에 따라 지급
-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게 대납하거나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은 추후에 국비·지방비 등에서 사후 정산

8. 의료비 지원금의 환수

-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착오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 **환수**
-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,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및 후유증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해당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 **환수**
- 환수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환수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

9. 지침의 적용 시기

- 대상질환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시기까지 적용
 - <서식1> 의료비 대납 신청서 또는 <서식2> 의료비 지급 신청서의 제출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인정
 - 이 지침 시행일 당시에 「이태원 사고 입원환자 대상 진료비 납부 관련 안내(22.11.2)」에 따라 작성된 <서식> 의료비 대납 신청서(임시 서식) 제출은 2022년 11월 2일부터 인정

10. 그 밖의 사항

- (위탁)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4조제1항,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의결(22.11.3)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이태원 사고 사상자 등에 대한 의료비 先 대납 및 사후 정산 관련 업무를 위탁함
- (심의위원회) ①의료비 지원대상자인지 여부, ②사고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질병 또는 후유증인지 여부, ③6개월을 초과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, ④이의신청, ⑤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 예정

< 관련 기관 및 문의 사항 >

| 문의처 | 연락처 | 문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(국민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) | 033-736-3330~3332 |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관련 전반적인 사항 |
| 보건복지상담센터 | 129 |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(청구관리부) | 033-739-5718~5720 | 「(불임)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내용」 관련 사항 및 진료비(약제비) 청구 절차·방법 |
| 보건복지부 (보험정책과) | 044-202-2702/2715 | 「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」 관련 사항 |
| 행정안전부 (복구지원과) | 044-205-5318 |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(NDMS) 등록 관련 사항 |

<서식 1>

의료비 대납 신청서(진료 접수 시)

<의료기관 제출용>

| | | | | |
|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수 진 자 구 분 | 성명 (본인) | (서명 또는 인) | 신청일자 | 년 월 일 |
| | 대리인 성명 | (서명 또는 인) | 본인과의관계 | |
| | 주 소 | | | |
| | 주민등록번호 | | | |
| | 전화 번호 | | 휴대전화번호 | |
| ①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- 사고로 인한 사망자 · 부상자 본인 <input type="checkbox"/> -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<input type="checkbox"/> -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②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(배우자, 직계존속 · 비속, 형제자매)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사고사상자 | 성 명 | |
| | | | 주민등록번호 | |
| | | | 수진자와의 관계 | |

《안내문》

- 빠른 쾌유와 건강을 기원하며 진료 시 불편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
- 이 신청서는 2022년 10월 29일(토)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· 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대납을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지원대상자는 ①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, ② 사망자 · 부상자의 가족(배우자 · 직계준속 · 비속, 형제자매)입니다.
 - * 지원대상자는 국가재난안전시스템(NDMS)에 등록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계로 관리되는 사람으로 “요양기관 정보마당(medicare.nhis.or.kr)”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→ “요양기관 정보마당”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우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수납하고 건강보험공단에 “의료비 지급 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된 신체적 · 정신적 질병, 부상 및 후유증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납합니다. (이 경우 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용을 수납하지 않습니다)
 - * ▲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, ▲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“심리치료 의료비”를 대납합니다.
- 대납되는 치료비는 법정 본인부담금, 비급여 의료비, 약제비 본인부담금이며, 비급여 진료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, 의료기관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.
 - * 비급여 의료비 중 미용시술, 치아교정, 예방접종, 각종 부대비용(예. 보험회사 제출용 진단서 발급비),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및 후유증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우선 사고일로부터 6개월(‘22.10.29부터 ‘23.4.28까지 진료(조제)분) 간 지원하되, 6개월을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 또는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◆ 수진자는 이태원 사고 당시(‘22.10.29 18:00~10.30 06:00)에 사상자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등에게 조회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.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- ◆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에게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·부상 및 그 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◆ 수진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,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, 부상 및 그 후유증이 아닌 경우에는 대납한 의료비를 환수합니다.

| | |
|----------|---|
| 첨부 서류 | 1. 수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|
| | 2. (수진자가 사고 사상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· 비속, 형제자매에 해당할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그 밖에 수진자와 사고 사상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※ 다만, 수진자가 “요양기관 정보마당”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불필요 |

<서식 2>

<공단 신청용>

의료비 지급 신청서

전강보험 차상위(C, E, F, H) 의료급여수급자 ((1종 2종)) 보훈대상자 기타(외국인 등)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수진자 | 성명 | | | 주민등록번호 | | |
| | 주소 | | | | | |
| | 전화번호 | | 휴대폰번호 | | | |
| | 구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고로 인한 사망자·부상자 본인 <input type="checkbox"/> -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<input type="checkbox"/> -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②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(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)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 | |
| 정보수신여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Y <input type="checkbox"/> N | 수신방법 | <input type="checkbox"/> SMS | <input type="checkbox"/> E-MAIL | () | |
| 사고 사상자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| | | 수진자와의 관계 |
| 대리인 | 성명 | | | 주민등록번호 | | |
| | 관계 | | 전화번호 | 휴대폰번호 | | |
| 신청액 | 합계 (①+②) | 원 | ① 법정 본인부담금 | 원 | ② 비급여 본인부담금 | 원 |
| 지급 받을 계좌 | 은행명 | | | 예금주 | | |
| | 계좌번호 | | | | | |

위와 같이 이태원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.

卷之三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- ◆ 수진자는 이태원 사고 당시('22.10.29 18:00~10.30 06:00)에 사상자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등에 조회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.
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 - ◆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에게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·부상 및 그 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- ◆ 수진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,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, 부상 및 그 후유증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를 환수합니다.

| | |
|------|--|
| 첨부서류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의료비 지급 계산서 또는 영수증 1부 2. 의료비 지급 세부 내역서 1부 3. 수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4. 의사 소견서 또는 이에 준하는 진료기록 1부 ※ 수진자가 이태원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·부상 및 그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소견 기재 필요 5. (수진자가 사고 사상자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에 해당할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그 밖에 수진자와 사고 사상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6. (입금할 계좌가 진료받은 사람 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) 수진자가 작성한 <서식3> 위임장 1부,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 ※ 사망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<서식4> 상속대표 험의동의서 1부 7. (<"요양기관 정보마당">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) 사상자가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|
|------|--|

<서식 3>

<공단 신청용>

위임장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|--|
| 위임받는 자 (대리인) | 성명 | | 전화번호 | |
| | 주민등록 번호 | | 환자와의 관계 | |
| | 주소 | | | |
| 위임자(수진자) | 성명 | | 전화번호 | |
| | 주민등록 번호 | | | |
| | 주소 | | | |
| 위임내용 (□에 √표시 요망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이태원 사고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| |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이태원 사고 의료지원금 입금 계좌 | | | |
|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 | | | |
| | | | | |

이태원 사고 의료지원금 신청 및 청구 관련하여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
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자(수진자)

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<서식 4>

<공단 신청용>

이태원 의료지원금 상속대표 합의동의서

| | |
|---------|--|
| 환자(사망인) | |
| 주민등록번호 | |
| 주소 | |

● 대표상속인 선정

| | | | |
|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|
| 지원금 대표상속인 | (인) | 환자와의 관계 | |
| 주민등록번호 | | 전화번호 | |
| 주소 | | | |

● 동순위 상속인

| | | | |
|---------|-----|---------|--|
| 지원금 상속인 | (인) | 환자와의 관계 | |
| 주민등록번호 | | 전화번호 | |
| 주소 | | | |

| | | | |
|---------|-----|---------|--|
| 지원금 상속인 | (인) | 환자와의 관계 | |
| 주민등록번호 | | 전화번호 | |
| 주소 | | | |

| | | | |
|---------|-----|---------|--|
| 지원금 상속인 | (인) | 환자와의 관계 | |
| 주민등록번호 | | 전화번호 | |
| 주소 | | | |

| | | | |
|---------|-----|---------|--|
| 지원금 상속인 | (인) | 환자와의 관계 | |
| 주민등록번호 | | 전화번호 | |
| 주소 | | | |

| | | | |
|---------|-----|---------|--|
| 지원금 상속인 | (인) | 환자와의 관계 | |
| 주민등록번호 | | 전화번호 | |
| 주소 | | | |

| | |
|----------|---|
| 첨부 서류 | 1. 사망증명서 1부 |
| | 2. 상속대표자 및 동의인 신분증 사본 각 1부, |
| | 3.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상속대표자, 동 순위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|

위 상속인 전원은 환자(사망인)의 이태원 사고 의료지원금 대표상속인을 상기와 같이 선정하여
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날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〈서식 5〉

<공단 신청용>

의료비 지원 철회 요청서

건강보험 차상위(C, E, F, H) 의료급여수급자 (1종 2종) 보훈대상자 기타(외국인 등)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|--|
| 수진자 | 성명 | | | 주민등록번호 | | | |
| | 주소 | | | | | | |
| | 전화번호 | | | 휴대폰번호 | | | |
| | 구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고로 인한 사망자·부상자 본인 <input type="checkbox"/> - 현장 구호활동 참여자 <input type="checkbox"/> -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신체적 부상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진료가 필요한 사람 <input type="checkbox"/> ②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(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)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 | | |
| 사고사상자 | 성명 | | 주민등록번호 | | 수진자와의 관계 | | |
| 신청액 | 합계 (①+②) | 원 | ① 법정 본인부담금 | 원 | ② 비급여 본인부담금 | 원 | |
| 의료비 지원 신청일 | 년 월 일 | | | | | | |
| 철회 요청사유 | | | | | | | |

위와 같이 본인이 공단에 신청한 의료비 지원신청 철회를 요청합니다.

※ 붙임. 수진자 신분증 사본 1부

卷之三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1.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

대상 범위

- 대상 보험종별 : 건강보험, 의료급여
- 대상 기관 : 모든 병·의원, 약국
- 대상 명세서 : 의과, 치과, 한방, 약국
- 대상 매체 : 정보통신망(EDI, 포털서비스, 인터넷 등), 전산매체, 서면청구
 - * 이태원 사고 관련 진료비(약제비) 지원 명세서에 한함

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

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

- 단, 비급여 진료내역은 “U항(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)”에 준용수가 (JJJJJJ)로 청구

○ 이태원사고 관련 지원대상 진료(조제투약)내역의 청구 시,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**MT043**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유형)을 기재

- 본인부담금 수납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유형상세코드’를 구분함

① 본인부담금(비급여 진료비 포함)을 환자가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,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 코드 “MT043”란에 “1/01”* 기재

* 1/01: 특별재난/이태원사고-공단대납

(※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신청서 제출)

② 본인부담금(비급여 진료비 포함)을 환자가 요양기관에 직접 납부 하는 경우,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“MT043”란에 “1/02”* 기재

* 1/02: 특별재난/이태원사고-환자납부

(※ 지원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신청서 제출)

[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]

| 구분코드 | 특정내역 | 특정내역 기재형식 | 설 명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|------|--|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-|------|----|--|--|--|------|----|
| MT043 | 국가재난 의료비지원 대상 유형 | 9(1)/X(2) | <p>대형사고, 자연재해,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'유형코드/유형상세코드' 형태로 기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지원 유형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지원유형</th> <th>유형코드</th> <th colspan="2">유형상세</th> <th>유형상세코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특별재난</td> <td>1</td> <td>이태원 사고</td> <td>공단대납</td> <td>01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환자납부</td> <td>0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지원유형 | 유형코드 | 유형상세 | | 유형상세코드 | 특별재난 | 1 | 이태원 사고 | 공단대납 | 01 | | | | 환자납부 | 02 |
| 지원유형 | 유형코드 | 유형상세 | | 유형상세코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특별재난 | 1 | 이태원 사고 | 공단대납 | 0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환자납부 | 02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* (선 시행 후 개정) 특정내역 설명란 신설(유형상세코드)에 대한 청구방법 고시 개정 예정

- (처방전)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원외처방이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인 경우 처방전의 '조제 시 참고사항'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되,
 - ①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,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"이태원 사고 공단대납"을 기재
 - ②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,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"이태원사고 환자납부"를 기재

<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명세서 작성 방법>

|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| ① 건강보험공단 대납 시 | ② 의료비 지원대상자 직접 납부 시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| · MT043: "1/01" 기재 | · MT043: "1/02" 기재 |
| 처방전(조제시 참고사항란) | "이태원사고 공단대납" 기재 | "이태원사고 환자납부" 기재 |
| (참고)제출서류 | 지원대상자가 요양기관에 "의료비 대납 신청서" 제출 | 지원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에 "의료비 지급 신청서" 등 구비서류 제출 |

- 기저 질환 등 타상병으로 진료(조제)를 받은 경우 이태원사고 관련 진료내역(조제투약내역)과 분리하여 청구

적용 기간

- '22.10.29.부터 '23.4.28.까지(6개월 간) 진료(조제)분 적용*

* 해당 기간은 「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」에 따름

- '22.11.29.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 가능

2. 작성 예시

예시1] 이태원사고 관련 질병, 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‘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및 원외처방전’을 발행한 경우[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 대신납부]

[의료기관 명세서]

① 명세서 일반내역

| 요양급여비용총액 2 | 요양급여비용총액 1 | 본인일부부담금 | 청구액 |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총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 ¹⁾ 120,000 | 100,000 | 주 ²⁾ 50,000 | 주 ³⁾ 50,000 | 주 ⁴⁾ 20,000 |

주1) 요양급여비용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+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

주2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[별표2]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3]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
- 100,000원(요양급여비용총액 1) X 50%(본인부담률) = 50,000원(100원미만 절사)
※ 실제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

주3) 요양급여비용총액1 -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

주4) 진료내역 ‘U항’(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)의 총액을 기재(비급여 포함)
※ 실제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

②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

| 발생단위구분 | 출번호 | 특정내역구분코드 | 특정내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주 ¹⁾ 1 | | 주 ²⁾ MT043 | 주 ³⁾ 1/01 |

주1)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‘1’ 기재

주2) 대형사고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

주3) 1(특별재난)/01(이태원사고-공단대납) ※ 기재형식: 9(1)/X(2)

③ 처방전 발행

| 처방의약품의 명칭 | 1회 투약량 | 1일 투여횟수 | 총 투약일수 | 용법 |
|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(생략) | | | | 매식(전,간,후) 시 분 복용 |
| 주사제 처방내역(원내조제 <input type="checkbox"/> , 원외처방 <input type="checkbox"/>) | | | 조제시 참고사항 | 본인부담 구분기호 |
| 주 ³⁾ 이태원사고 공단대 납 | | | | |
| | | | | |

주)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한글로 “이태원사고 공단대납” 기재

[약국 명세서]

① 명세서 일반내역

| 요양급여비용총액 2 | 요양급여비용총액 1 | 본인일부부담금 | 청구액 |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 ¹⁾ 21,000 | 20,000 | 주 ²⁾ 6,000 | 주 ³⁾ 14,000 | 주 ⁴⁾ 1,000 |

- 주1) 요양급여비용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+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
 주2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[별표2]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4]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
 - 20,000원(요양급여비용총액 1) X 30%(본인부담률) = 6,000원(100원미만 절사)
 ※ 실제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
 주3) 요양급여비용총액1 -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
 주4) 진료내역 'U항'(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)의 총액을 기재
 ※ 실제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

②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

| 발생단위구분 | 줄번호 | 특정내역구분코드 | 특정내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주 ¹⁾ 1 | | 주 ²⁾ MT043 | 주 ³⁾ 1/01 |

- 주1)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'1' 기재
 주2) 대형사고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
 주3) 1(특별재난)/01(이태원사고-공단대납) ※ 기재형식: 9(1)/X(2)

예시2] 이태원사고 관련 질병, 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'입원진료'한 경우 (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 대신 납부)

[의료기관 명세서]

① 명세서 일반내역

| 요양급여비용총액 2 | 요양급여비용총액 1 | 본인일부부담금 | 청구액 |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 ¹⁾ 1,300,000 | 1,200,000 | 주 ²⁾ 240,000 | 주 ³⁾ 960,000 | 주 ⁴⁾ 100,000 |

- 주1) 요양급여비용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+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
 주2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[별표2]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
 - 1,200,000원(요양급여비용총액 1) X 20%(본인부담률) = 240,000원(10원미만 절사)
 ※ 실제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
 주3) 요양급여비용총액1 -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
 주4) 진료내역의 'U항'(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)의 총액을 기재(비급여 포함)
 ※ 실제 진료비 지원대상자에게 징수하지 않음

②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

| 발생단위구분 | 줄번호 | 특정내역구분코드 | 특정내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주 ¹⁾ 1 | | 주 ²⁾ MT043 | 주 ³⁾ 1/01 |

- 주1)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'1' 기재
 주2) 대형사고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
 주3) 1(특별재난)/01(이태원사고-공단대납) ※ 기재형식: 9(1)/X(2)

예시3) 이태원사고 관련 질병, 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‘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 및 원외처방전’을 발행한 경우[본인부담금 환자 직접납부]

[의료기관 명세서]

① 명세서 일반내역

| 요양급여비용총액 2 | 요양급여비용총액 1 | 본인일부부담금 | 청구액 |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총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 ¹⁾ 120,000 | 100,000 | 주 ²⁾ 50,000 | 주 ³⁾ 50,000 | 주 ⁴⁾ 20,000 |

주1) 요양급여비용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+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

주2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[별표2]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3]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
- 100,000원(요양급여비용총액 1) X 50%(본인부담률) = 50,000원(100원미만 절사)

주3) 요양급여비용총액1 -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

주4) 진료내역 ‘U항’(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)의 총액을 기재(비급여 포함)

②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

| 발생단위구분 | 줄번호 | 특정내역구분코드 | 특정내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주 ¹⁾ 1 | | 주 ²⁾ MT043 | 주 ³⁾ 1/02 |

주1)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‘1’ 기재

주2) 대형사고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

주3) 1(특별재난)/02(이태원사고-환자납부) ※ 기재형식: 9(1)/X(2)

③ 처방전 발행

| 처방의약품의 명칭 | 1회 투약량 | 1일 투여횟수 | 총 투약일수 | 용법 |
|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(생략) | | | | 매식(전,간,후) 시 분 복용 |
| 주사제 처방내역(원내조제 <input type="checkbox"/> , 원외처방 <input type="checkbox"/>) | | | | 조제시 참고사항 |
| | | | | 본인부담 구분기호 |
| | | | | 주 ⁵⁾ 이태원사고 환자 납부 |
| | | | | |
| | | | | |

주)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한글로 “이태원사고 환자납부” 기재

[약국 명세서]

① 명세서 일반내역

| 요양급여비용총액 2 | 요양급여비용총액 1 | 본인일부부담금 | 청구액 |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 ¹⁾ 21,000 | 20,000 | 주 ²⁾ 6,000 | 주 ³⁾ 14,000 | 주 ⁴⁾ 1,000 |

주1) 요양급여비용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+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

주2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[별표2] 및 같은 법 시행규칙 [별표4]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을 기재
- 20,000원(요양급여비용총액 1) X 30%(본인부담률) = 6,000원(100원미만 절사)

주3) 요양급여비용총액1 -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

주4) 진료내역 'U항'(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)의 총액을 기재

②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

| 발생단위구분 | 줄번호 | 특정내역구분코드 | 특정내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주 ¹⁾ 1 | | 주 ²⁾ MT043 | 주 ³⁾ 1/02 |

주1)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'1' 기재

주2) 대형사고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

주3) 1(특별재난)/02(이태원사고-환자납부) ※ 기재형식: 9(1)/X(2)

예시4) 이태원사고 관련 질병, 부상 및 그 후유증으로 '입원진료'한 경우 (본인부담금 환자 직접납부)

[의료기관 명세서]

① 명세서 일반내역

| 요양급여비용총액 2 | 요양급여비용총액 1 | 본인일부부담금 | 청구액 | 건강보험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 ¹⁾ 1,300,000 | 1,200,000 | 주 ²⁾ 240,000 | 주 ³⁾ 960,000 | 주 ⁴⁾ 100,000 |

주1) 요양급여비용총액2는 요양급여비용총액 1 +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금 총액

주2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[별표2]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
- 1,200,000원(요양급여비용총액 1) X 20%(본인부담률) = 240,000원(10원미만 절사)

주3) 요양급여비용총액1 -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

주4) 진료내역의 'U항'(건강보험100분의 100본인부담)의 총액을 기재(비급여 포함)

②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

| 발생단위구분 | 줄번호 | 특정내역구분코드 | 특정내역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주 ¹⁾ 1 | | 주 ²⁾ MT043 | 주 ³⁾ 1/02 |

주1)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구분자 '1' 기재

주2) 대형사고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유형을 기재

주3) 1(특별재난)/02(이태원사고-환자납부) ※ 기재형식: 9(1)/X(2)

3. 질의 · 응답

| 연번 | 질 의 | 응 답 | | | | |
|------|---|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1 | 이태원사고 관련 질환 치료 중 타상병 진료 시 명세서 작성방법은?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진료(조제투약)내역과 기저 질환 등 타상병 진료(조제투약)(ex.코로나19 등)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각각 작성·청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때, 요양급여일수와 입원(내원)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| | | | |
| 2 | 이태원사고 관련 질환 치료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?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태원사고 의료비 지원 진료(조제투약)내역과 코로나19 의료비 지원 진료(조제투약)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각각 작성·청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때, 요양급여일수와 입원(내원)일수는 각각의 해당 일수를 기재하여 청구 | | | | |
| 3 | 이태원사고 관련 비급여 치료비 청구방법은?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U항(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부담)에 준용 수가(JJJJJJ)로 청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준용수가 청구는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“JS009” (준용명)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함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행위비급여 목록이 있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급여 코드, 금액/비급여코드, 금액/… 2. 행위비급여 목록이 없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급여행위명, 금액/비급여행위명, 금액/… | | | | |
| 4 | 이태원사고 관련 의료비 서면 명세서 청구방법은?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면명세서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본인부담금 납부여부에 따라 “이태원사고 공단대납” 또는 “이태원사고 환자납부”를 기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예시1)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 하는 경우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 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특정내역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이태원사고 공단대납</td> </tr> </table> (예시2)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요양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top: 10px; 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특정내역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이태원사고 환자납부</td> </tr> </table> | 특정내역 | 이태원사고 공단대납 | 특정내역 | 이태원사고 환자납부 |
| 특정내역 | 이태원사고 공단대납 | | | | | |
| 특정내역 | 이태원사고 환자납부 | | | | | |
| 5 | (의료급여) 이태원사고 관련 진료 중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의 청구방법은?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명세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“MT043”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)란에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수납여부에 따라 해당 ‘유형상세 코드’를 기재하여 청구 | | | | |

| 연번 | 질 의 | 응답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--|-----------|----------|
| 6 | (의료급여) 이태원사고 관련 진료 중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 명세서의 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치료비 청구방법은? | <p>○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정액명세서 외의 별도의 의과 입원명세서에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“MT043”(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)란에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수납여부에 따라 해당 ‘유형상세코드’를 기재하여 분리청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100분의100본인부담) U항에 청구함 - (비급여) U항에 준용수가(JJJJJ)로 청구함 <p>※ 준용수가 청구는 출번호단위 특정내역 “JS009” (준용명)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행위비급여 목록이 있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급여 코드, 금액/비급여코드, 금액/... 2. 행위비급여 목록이 없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급여행위명, 금액/비급여행위명, 금액/... | | | | | | | | |
| 7 | 이태원사고 관련 질환으로 입원치료 중 포괄수가(신포괄수가 포함) 진료발생 시 청구방법은? | <p>○ 질병군 포괄수가(신포괄수가)로 청구하지 않고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여 청구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질병군 포괄수가 관련 행위별 명세서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“MT064(질병군 적용제외 유형)”란에 “C/02” 기재 <p>※ (선 시행 후 개정) 특정내역 설명란 신설(유형상세코드)에 대한 청구방법 고시 개정예정</p> <p>(예시) 질병군 관련 진료내역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90EE90;"> <th>별생단위구분</th> <th>출번호</th> <th>특정내역구분</th> <th>특정내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주1) 1</td> <td></td> <td>주2) MT064</td> <td>주3) C/0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1)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발생 ‘1’ 기재 주2)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되어 행위별로 적용하는 경우 질병군 적용제외 사유(특별재난)를 기재 주3) C(의료비지원 등 동시진료)/02(특별재난) ※ 기재형식: X(1)/X(2)</p> | 별생단위구분 | 출번호 | 특정내역구분 | 특정내역 | 주1) 1 | | 주2) MT064 | 주3) C/02 |
| 별생단위구분 | 출번호 | 특정내역구분 | 특정내역 | | | | | | | |
| 주1) 1 | | 주2) MT064 | 주3) C/02 | | | | | | | |
| 8 | 이태원사고 관련 의료비 명세서에 특정내역(MT043)을 누락하여 지급된 경우 청구방법은? | <p>○ 이의신청(재심사조정청구 포함) 절차에 따라 기지급된 건 환수요청 후 특정내역 구분코드 “MT043”란을 작성하여 청구함</p> | | | | | | | | |
| 9 |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자격을 가진 보훈환자의 이태원 사고 의료비 관련 청구명세서 작성방법은? | <p>○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보훈관련 공상등 구분자코드 미기재함 | | | | | | | | |